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0일, 이종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원회(2024. 11. 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2024. 11. 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2024. 11. 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2025. 2. 11.)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원회(2025. 11.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원회(2025. 11. 30.)

상정,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30.)

상정,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종배의원)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조

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